

# “대한민국 출판계를 말살하려는가”

## 최문순 의원 개정안에 출판·저작권단체 발끈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과 관련해 출판권자 및 출판자 단체들이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저작권 질서를 무너뜨리는 개악법률"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 한국출판인회의(회장 한철희), 한국학술출판협회(회장 강희일),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김옥영) 등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 17개 단체는 지난 4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디지털도서관 원격 열람 허용, 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감경 또는 면제,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해 저작권자와 출판권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나아가 출판·인쇄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다수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작물의 불법복사 행위와 포털 등을 통한 불법 유통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합법화 하면 해적 출판의 범람은 물론 출판·인쇄산업을 괴멸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 성명서 전문 |

민주당 최문순 의원 등은 대한민국의 지식-출판 생태계를 말살하려 하는가?

2009년 4월 2일, 최문순 의원이 대표하고 홍재형, 송민순, 이미경, 박은수, 이종걸, 권영길, 최철국, 김재윤, 김영진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의 4가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를 허용하도록 함.
2.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도서관 등의 안, 다른 도서관 등의 안, 도서관 등의 밖에서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함.
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4. 온·오프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 감경 또는 면제함.

출판계는 이 개정안이 이 나라의 지식-출판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 법률임을 확인한다. 이 안은 적법한 저작물의 무단 대량 복제를 추동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무단 배포와 사용을 확산하며,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리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상상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지만, 만일 이 안이 법률로 의결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임은 불을 보듯 분명하다.

이 뿐만 아니라 잠복 중이던 40만 개의 복사기기들은 순식간에 공공연한 해적출판의 공장이 되어 사회의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이로 인한 지식-출판계의 손실은 최소한 연간 약 3000억 원에 이를 것이다. 또한 임의로 디지털 복제된 서적 파일이 도서관을 통해 전 사회에 유포될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확산되는 디지털 파일은 전자책 시장을 붕괴시킬 것이고, 임의로 프린트 된 인쇄물은 출판 인쇄 산업을 괴멸시킬 것이다. 그 피해액은 최소 2조 원을 넘을 것이며 이로 인한 실직인구는 약 20만 명에 달할 것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임의로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저작권의 실체가 불분명해질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고, 그 결과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갈등이 견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이며, 지식재산의 물질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돌이킬 수 없는 괴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최문순 의원 등은 과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1.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 복사 행위의 제1차 희생물이 되고 있는 학술저작출판물이 1000권 제작되어 서점에 배포되면 그 가운데 85%의 책이 1년 안에 반품되어 사장되고 있다는 사실.
2. 출판 저작물 1쪽에 대한 복사 저작료가 일본의 경우 20엔, 미국의 경우 평균 1.5달러, 독일의 경우 최신 복사기 한 대당 307유로나 대한민국에서는 5원에 불과하다는 사실.
3. 저작권 관련 법률 소송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판례의 부족과 사안의 복잡함 때문에 그 판결 시간이 다른 어떤 법률 소송보다도 길고, 그 결과 저작권자가 승소하여도 창작의 의지를 상실하고 사업 기반도 붕괴되고 만다는 사실.
4. 온라인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의 상당수가 불법이고 그 행위들은 P2P, 웹하드, 포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도 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은 저작권자보다 더 많은 부당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실.

21세기는 지식중심 사회이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지식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고, 세계 각국은 앞선 지식의 창출을 위해 국력을 집중한다. 지적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새로운 지식 창출의 필수불가결의 조건이며 이러한 사실적 진실을 외면하는 어떠한 국가도 지식경쟁의 시대에 생존할 수 없다. 우리 지식-출판계는 이러한 사회 역사적 사명을 깊이 자각해 왔다. 그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선진 지식을 수입, 확산하고 우리 지식을 창출, 확장해 온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지식-출판 시장은 영어권의 1/30에 불과하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진흥의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저작물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어가는 원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희망을 신뢰하는 저작자와 출판인들의 사회 역사적 사명 의식을 제외하고 또 어디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는가?

## | 출판인들의 요구사항 |

1. 공중용 복사기에 의한 복사의 합법화는 해적 출판 유인 법률에 다름 아니다.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도서관 등이 저작물을 무단 디지털 복제하여 관 내외에 송출하는 행위는 지식-출판계의 학살에 다름 아니다.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무단 사용케 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말살에 다름 아니다.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4.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 또는 유도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폐지에 다름 아니다.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최문순 의원 개정안 주요내용

첫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불구 상태였던 디지털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격 열람을 가능하도록 했다. 학술논문과 같은 비판매용 도서마저도 원격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학교 연구소에서조차 학교 도서관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다만, 판매용 도서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원격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 도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기본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저작물은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개별적인 '저작권재산권 제한(공정이용)' 조항 중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는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한미FTA 이행 법률안의 하나인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고,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변재일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신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하였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 중개 기능과 관련하여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였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저작권 위반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자율적인 모니터링은 인정하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두려워 과도하게 모니터링 부담을 지거나, 나

가 통신 내용의 검열자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한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104조는 신설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되었고, 현재도 법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조항 자체를 삭제하였다. 이 조항은 내용 자체가 모호함 투성이다. 무엇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인지 규제 대상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이 조항의 정의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 규제 내용도 모호하다. 이러한 모호함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 사업의 불안정성을 주며 정부의 자의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하여, 결국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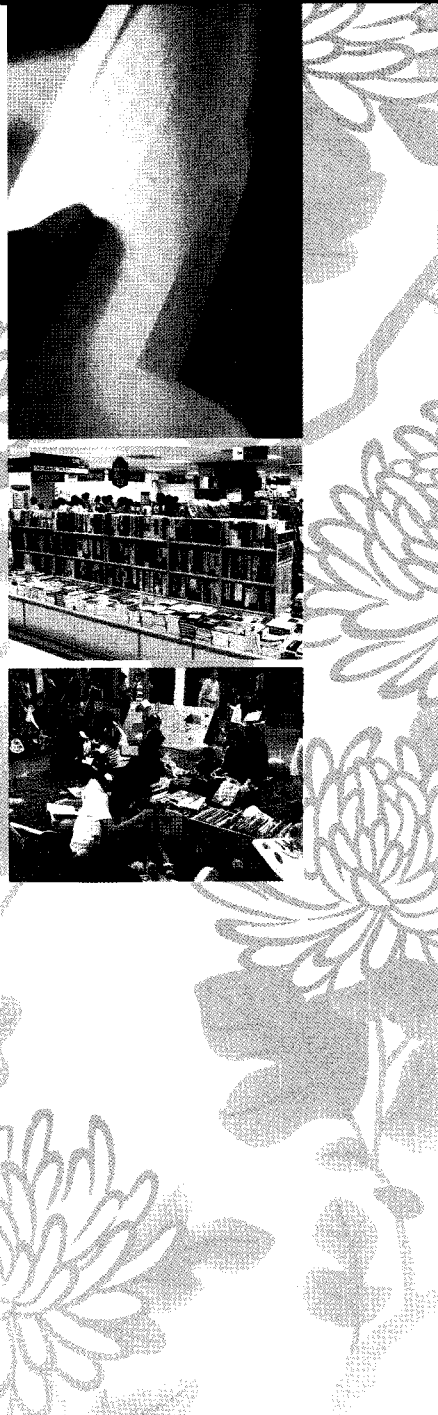
셋째,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최근 법무법인들이 경미한 저작권 위반에도 형사처벌을 위협수단으로 삼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청소년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 저작권에 대한 대중적 이해가 부족하고, 권리 침해와 공정이용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미한 저작권 침해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민 다수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적용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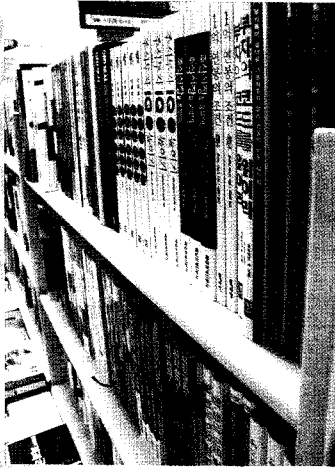
### 도서관법, 저작권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공표

[요약]

- 간행물 납본(제출) 부수 축소
  -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는 제도를 폐지함.
  - 다만,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는 제도는 유지됨.

분야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총류, 철학, 사회과학, 예술, 문학 일반(희곡, 수필 등), 역사	시, 아동, 종교, 학습참고서, 예술과학, 순수과학, 어학, 문예집, 청소년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2]	[문화체육관광부 2]	국립중앙도서관 2	국립중앙도서관 2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2 국회도서관 2	국립중앙도서관 2	국회도서관 2	
납본부수	6부 => 4부 [문화부 납본 폐지]	4부 => 2부 [문화부 납본 폐지]	4부 [종전과 동일함]	2부 [종전과 동일함]
납본시기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 2. 인터넷 온라인 자료도 도서관 자료에 포함

- ① 국립중앙도서관에 온라인 자료 수집, 보존 권한을 부여함.
- ②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 납본 조항 신설.
- ③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의 ②와 ③의 경우에 납본이나 협조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출판 단체에서는 디지털 파일이 불법적으로 복제, 유통되는 것 등을 우려해 이를 반대해 왔는데, 출판 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임] 그런데 비온라인 자료는 납본하지 않을 경우 정가의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지만, 온라인 자료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디지털 파일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하는 조항은 없으므로, 사안과 콘텐츠 내용에 따라 협조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하면 되고, 이 법 시행 일 전에 출판 단체의 입장이 안전하고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된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임.

###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최근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온라인 자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하여금 온라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도록 복제근거를 마련하고,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도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저작권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 밖에 저작물의 복제·

배포에 관한 방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종전에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등을 위하여 출판사로 하여금 간행물 2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예산·행정상 낭비가 초래되고 출판계에게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2008년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따라 간행물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 17개 단체 대표 명단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백석기·불교출판문화협회 회장 원택·학습자료협회 회장 유정묵·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 신재석·한국기독교출판협회 회장 정형철·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회장 권대우·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김옥영·한국복사전송권협회 이사장 조동성·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이사장 지상학·한국음악실연자연연협회 회장 송순기·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지명길·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 서희덕·한국전자출판협회 회장 최태경·한국출판경영자협회 회장 조은상·한국출판인회의 회장 한철희·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 한민구·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강희일